

의안번호	2219257
의 퇴 인	허영의원
회 답 일	2026.10.1.
추 계 번호	26D28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별표 제26호의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별표 제26호의2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범위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포함(안 별표 제26호의2)
 -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현저히 공공기관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범위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여 신고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은 현행법 제26조의21)에 따라 각 불법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 확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규모 및 건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2022~2025년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1]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실적: 2022~2025년

구분		2022	2023	2024	2025
보상금	건수	99	45	55	33
	금액(백만원)	2,256	814	1,149	379
포상금	건수	15	2	12	5
	금액(백만원)	462	97	152	368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6년 II-1 사업설명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na.go.kr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